

의안번호	2219053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6. 5. 27.
추계번호	26E269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
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특례
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 특례(8년 이상 → 3년 이상)의 적용기한 3년 연장 -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-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9조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¹⁾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(8년 → 3년)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,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-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²⁾는 일반적으로 경작기간 8년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지만,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 3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

1) 고령 농업인(65세 이상~79세 이하, 10년 이상 농업경영)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거나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경우, 매월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

2) 양도소득세 100% 감면(단, 동 특례는 1년간 1억원, 5년간 2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종합한도를 적용)

-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, 전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실적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(경작기간이 3년 이상 8년 미만)를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세수효과를 추계해야 하지만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 -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,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, 경작기간별 감면액도 구분할 수 없음
 - 참고로 자경농지(8년 이상 경작 +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)에 대한 전체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]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체 감면 실적: 2019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p
감면실적	12,435	16,323	20,459	16,482	10,664	9,033	6,563

주: p는 잠정치

자료: 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연도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